

원격교육개발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3. 11. 24.

제1차 개정 2025. 7. 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AI융합교육혁신원 원격교육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업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5.7.2.)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2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원격교육개발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AI융합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5.7.2.)

②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전임교원, 전문연구원, 직원 및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원격수업 개발, 운영, 관리 등 원격교육 질 관리에 관한 사항
- 학습관리시스템(LMS)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e-러닝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외부 기관과의 원격수업 공동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시청각운영실 및 공용강의실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7.2.)
-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“원격수업관리위원

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**교무연구처장**, **AI융합교육혁신원장**, 원격교육개발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교원, 학생, 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,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 (개정 2025.7.2.)

③ 위원장은 **AI융합교육혁신원장**이 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25.7.2.)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(성과관리계획 수립 등)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3. 센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정보보호 및 저작권

제7조(정보보호 및 저작권) ① 센터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은 담당 교원과 본교에서 공동으로 가진다.

③ 담당 교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.

④ 강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,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제작자 본인에게 있다.

⑤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원격수업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5장 기타

제8조(규정등의 제·개정) ① **AI융합교육혁신원장**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 (개정 2025.7.2.)

- ② 원격교육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규정 등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제규정 기본 규정」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-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규정)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472, 2023.11.24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468, 2025.07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 지침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,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.